

'24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사망 근절을 위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7일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추락 사고사망 감축 및 시스템비계 보급 확산에 기여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2.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을 모두 보유한 업체에 한하며, 원도급 공사금액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원을 제한하며,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제한 사유>

-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700위 이내의 건설업체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 당해연도 용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용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3. 지원설비 및 지원조건

○ 지원설비

구분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지원설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등 일체	수직보호망,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최대높이 3.5m 이하, 상부에 작업발판이 설치된 사다리 ※ S마크 인증품에 한함

○ 지원조건 :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연간 3회까지 지원(20억 미만: 9개소, 20억 ~50억 미만: 3개소)

구분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추락방호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지원비율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급*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10% 상향 적용 * 덧붙임 1 참조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 ※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
비고	①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인 경우,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47%, 낙하물방지망 및 추락방호망은 재료비의 50~65% 지원 ②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시스템비계 지원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	

4. 보조금 지급조건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구입 완료하고,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선금급 지급)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가능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5.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예산) 71,467백만원
 -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4. 1. 17.(수) ~ 일선기관별 자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관할 공단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덧붙임2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방문, ☎ 1544-3088) 또는 온라인(clean.kosha.or.kr) 접수

6.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기업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참여 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거짓·부정) 보조금 및 5배 추가 환수, 5년 제한 (임의매각·훼손·분실)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목적외사용·국외이전) 보조금 및 2배 추가 환수, 3년 제한

'24년 추락방지 보조지원품목 조건표 및 단가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액(부가세별도)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건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56	834	1,313	2,741	4,174	5,601	7,030	8,268	9,435	10,737
비계 2열	417	985	1,551	3,247	4,960	6,694	8,398	10,042	11,687	13,330
수직보호망	111	271	432	914	1,395	1,878	2,358	2,621	3,066	3,513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2,027	13,318	14,608	15,698	16,450	17,703	18,784	20,007	20,858	22,076
비계 2열	14,974	16,618	18,262	19,538	20,242	21,810	22,946	24,461	25,754	27,277
수직보호망	3,959	4,001	4,041	4,326	4,488	4,840	5,146	5,497	5,791	6,137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비계 1열	23,294	24,270	24,962	26,156	27,349	28,263	29,444	30,000
비계 2열	28,526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424	6,699	7,029	7,373	7,626	7,965	8,280	8,482

○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건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15	738	1,162	2,426	3,694	4,956	6,222	7,316	8,350	9,502
비계 2열	369	871	1,372	2,874	4,389	5,925	7,431	8,887	10,342	11,797
수직보호망	98	240	382	808	1,235	1,662	2,087	2,319	2,713	3,110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0,644	11,785	12,927	14,042	14,954	16,094	17,233	18,355	19,494	20,632
비계 2열	13,251	14,707	16,161	17,581	18,742	20,195	21,647	23,076	24,528	25,978
수직보호망	3,504	3,540	3,576	3,893	4,155	4,482	4,809	5,137	5,464	5,790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4,050㎡ 미만
비계 1열	21,544	22,682	23,774	24,910	26,047	27,183	28,153	29,167	30,000
비계 2열	27,138	28,588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052	6,380	6,694	7,021	7,347	7,674	8,001	8,286	8,611

- 작업발판 1,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적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적용

구분	1열	2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3,900㎡ 이상	3,000㎡ 이상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4,050㎡ 이상	3,150㎡ 이상

- 전체 구조물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일부 공정·공사*에 대해서는 적정 보조금 지급을 위해 조건표상의 보조금 일부(53%)지원 가능

* 설비, 유리·창호, 도장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을 포함하며 대수선 공사는 제외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시스템비계 보조지원 시 조건표의 47% 보조지원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부가세별도)

-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지원비율	65%	50%

-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단위	재료비 (원)	노무비 (원)	단가 (원)	사용장소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	㎡	3,700	7,400	11,100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등 건축물 외부
추락방호망	㎡	2,400	5,500	7,900	철골조립현장, 공장신축현장, 개보수 현장 등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보조 시 재료비 단가 × 설치면적 × 보조비율 적용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원도급사 보조시와 동일)

-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종류	단위	규격	단가(원)	비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개	1.5~2.5m미만	651,000	현장 당 2개 이내로 안전인증(S마크) 제품에 한해 지원
		2.5~3.5m이하	772,000	

※ 1.5m 미만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건설업

[단위: 대(식), 천원]

투 자 설 비 명	모델/규격	수량	설치면적 (㎡)	임대기간 (일)	소요금액 (a+b)	자체부담 금액 (a)	보조신청 금액(b)	투자개시 예정일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							
계	-	-			352	176	176	<i>비계설치 일 기재</i>	<i>비계해체 일 기재</i>
시스템비계	1열	-	100	-	100	50	50	202300.00.	202300.00.
	00산업	1,000							
시스템비계	2열	-	100	-	100	50	50	202300.00.	202300.00.
	00산업	1,000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	100	-	100	50	50	202300.00.	202300.00.
	00산업	1,000							
안정방망	플라잉넷	-	50	-	50	25	25	202300.00.	202300.00.
	00산업	1,000							
사다리형 작업발판	높이 0m	2	-	-	2	1	1	202300.00.	202300.00.
	00산업	1,000							

주1) 소요금액(a+b) : 자체 부담금액(a) + 보조신청금액(b)

주2) 자체부담금액(a)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주3) 보조신청금액(b)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임대·설치·해체·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 비율을 반영한 금액

주4) 투자개시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를 임대·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설치·사용하는 시기이며, 투자완료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사용을 완료하여 해체·만료하는 시기를 말함

▣ 첨부서류

서 류 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사업)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온라인 (전산)	오프라인 (직접)			
① 견적서(원본)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	○	○	○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 건설업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	○	○	○	○
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	○	○	○	○
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	×	×	○	×	×

주)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33조 관련)

■ **건설업**

1.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임대·설치업체)
 ➡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공단→사업주) ➡
 보조금 지급요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등)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사업주, 임대·설치업체→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임대·설치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요청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서류 등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요청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완료 확인요청 : **설치 및 구입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확인자 서명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시스템비계 작업발판(1월,2월) 및 안전방망 설치면적 변경 시에는 투자계획변경 요청을 생략하고, 공단 투자완료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설치면적으로 정산하되 설치면적 증가시에도 최초 보조금 지급 결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보조금 지급신청 후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시 결정된 사항 및 투자완료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확인자 서명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추가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5년)
 - ② 지원설비 해체완료 전에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 ③ 보조금 지급결정 후 설치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부담금 페이백 등)(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 ⑤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후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보조금 지급 후 발생 시 신청 제한기간 3년)
 - ⑥ 공단의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 ⑦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클린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클린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
2. 클린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3. 클린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클린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학연·지연·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클린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클린사업 추진 주의사항】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임대·설치업체와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임대·설치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임대·설치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별지 제10호서식]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설치·구입·해체 확인요청서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설치구입해체) 확인요청서

(제31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건설업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 .)(남, 여)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 -	
확인 요청일	20	* 요청일 : 설치(구입) → 설치(구입)완료 후 5일이내 해체 → 해체(사용)완료 10일 전	

■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 내역 (단위: 천원)

품목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총계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 투자완료 확인요청 품목 수량

1	시스템비계 : 작업발판 1열 ()㎡, 작업발판 2열 ()㎡
2	안전방망 : 수직보호망 ()㎡, 낙하물방지망 ()㎡, 추락보호망 ()㎡
3	사다리형 작업발판 : ()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또는 전부)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 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포함),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보조금 지급요청서(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제31조제3항)

■ 건설업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 .)(남, 여)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지급 요청금액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1	금액:	천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31조제3항 따라 보조금 지급 설비의 투자완료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사업주)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등) 사본 1부
 3. 설비 임대·설치·해체·구매 계약서(사업주↔임대·설치업체) 사본 1부
 4. 입금 증빙서류(전체 투자설비·공사 대금 및 부가세 입금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제36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 관련)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형태	<input type="checkbox"/> 클린사업		<input type="checkbox"/>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input type="checkbox"/>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완료일자	20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지 급 결 정 액	선 금 신 청 액
<input type="checkbox"/> 클린사업(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input type="checkbox"/>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 규칙 제36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 을 신청합 니다.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div style="text-align: right;"> 20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div>				수 수 료
				없 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시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시스템비계 임대차(시공) 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시스템비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 1. 공 사 명 :
- 2. 임대차 기간 : 20 ~ 20
- 3. 계약 금액 : 원정
- 4. 공급 가액 : 원정
- 5. 부가가치세 : 원정
- 6. 납품장소 :
- 7. 별첨 : 시스템비계 내역

20

※ 상기 계약서 내용은 필수 기재 사항이며 필수 기재 사항 이외 기타 사항은 공급업체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름

임대인 “갑”

주 소 :
 사업자번호 :
 전화 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임차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이 름 :

